:2025.01.07.14:34 : :2025.05.15 11:46

답 변 서

사 건 2024하단13732 파산선고 2024하단13732 면책

신 청 인 최병선

(채무자)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는 채권자 유한회사 지앤케이파트너스(이하 '채권자'라 합니다)의 2024. 12. 26.자 이의신청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1. 이의신청의 요지

채무자가 대표이사로 있었던 주식회사 대한상인(이하 '대한상인'이라 합니다)의 재무제표를 조작하여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총 30억원의 사기대출을 받아 이를 개인적으로 유용하거나 코인투자에 사용하였다.

채무자는 대한상인의 주요 수입원인 생큐마트 운영권을 자신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생큐소프트로 이전하여 채무변제는 회피하면서 수익은 빼돌렸다. 따라서 채무자의 파산 신청은 사기파산에 해당하므로 파산절차는 중지되어 야 한다.

2. 분식회계를 통한 사기대출에 관하여

채무자는 대한상인이 기술보증기금과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대출을 받으면

서 위 기관들을 기망한 적이 없습니다. 채권자의 사기대출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 그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3. 코인투자에 관하여

채권자는 채무자가 티큐코인 개념과 티큐네트웍스를 만들어 대한상인의 자금을 빼돌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채무자는 대한상인의 자금을 티큐네트웍스로 빼돌린 사실이 없습니다. 이는 대한상인의 재무제표와 법인계좌를 살펴보면 바로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4. 생큐소프트에 관하여

생큐소프트는 채무자와 무관한 회사이고 채무자가 그 설립에 관여한 사실도 없습니다.

채권자는 대한상인에 대한 귀원 2024하합328 파산선고 사건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2024. 7. 24. 이의신청을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위 사건의 파산관재인은 생큐소프트는 채무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대한상인의 자산이 생큐소프트로 이전된 증거 등도 없어 부인의 대 상이 아니라고 하였습니다(첨부서류 1.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의견).

5. 채권자의 사기, 업무상 배임 고소에 관하여

채권자는 2024. 9. 3. 채무자를 사기 및 업무상 배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대하여 경기분당경찰서는 2024. 12. 5. 사기는 혐의없음, 업무상 배임은 각하로 불송치결정을 하였습니다(첨부서류 2. 수사결과 통지서).

: : 2025.01.07.14:34 : : : 2025.05.15 11:46

6. 결론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채권자의 이의신청은 사실과 다르고 그에 대한 증거도 없습니다. 따라서 채권자의 파산 신청은 사기파산이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2025. 1. .

신청인의 대리인 변호사 김갑천

수원회생법원 제107단독(개인파산)(가) 귀중